

##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

- **법적근거**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7조, 시행령 제15조, 시행규칙 제63조, 제63조의2

◆ **법 제17조(예방규정) ④**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**

- **시행일** : 2024. 7. 4.

### □ 평가방법

- **(주체)** 소방청장(소방청, 소방관서,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)
- **(대상)**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·취급 제조소등
- **(방법)**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
  - 4년 주기 정기평가,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
    - 최초평가 :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
    - 정기평가 :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
    - 특별평가 :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**(내용)**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(고시)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
- **(조치)**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범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
  - 500만원 이하 과태료 :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

### □ 추진계획

- **(평가대상)**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

구분	총계	제조소	옥외 저장소	옥내 저장소	옥외탱크 저장소	암반탱크 저장소	이송 취급소	일반 취급소
예방규정	12,735	1,639	436	862	7,260	29	360	2,149
이행평가	<b>3,581</b>	<b>191</b>	<b>109</b>	<b>63</b>	<b>2,844</b>	<b>29</b>	<b>199</b>	<b>146</b>

- **(추진절차)**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

